

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심사보고서

2003. 12. 3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년 11월 25일 마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3년 12월 1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00회 제2차정례회 제1차위원회 (2003. 12. 3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제안설명자 : 주민자치과 활동연

가. 폐지이유

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법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는 그 설치근거인 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존치실익이 상실되었기에 이를 폐지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을 폐지함.

3. 전문위원 겸토보고 (전문위원 박관수)

- 대통령령인 제2의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규정에 의하여 1998년 11월 27일 조례 제400호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

법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정되었던 동 조례는 2003년 6월 23일 대통령령 18003호로 제2의 건국법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은 폐지되었으나 동 위원회의 잔무처리를 위한 경과규정에 의하여 2003년 8월 31일부터 동 규정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판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전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3. 11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

1. 폐지이유

제2의 전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전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는 그 설치근거인 제2의전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더 이상 존치실익이 상실되었기에 이를 폐지하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전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을 폐지함.

3. 폐지근거

제2의전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(2003.6.23 대통령령 18003호)

4. 폐지조례(안) : 별첨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서울특별시마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함.

나.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03.11.24)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전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제2의전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